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	미조시귀신시				' <i>)</i>
	담당 부서	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안기복 선임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연구·개발을 목적으로 5호 단말기에서 접속하는 폐쇄형 클라우드를 타 폐쇄형 클라우드와 전용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고, 연결된 폐쇄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 API를 연계하여 호출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는지 여부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(이하 "5호 단말기")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을 정하고 있고,					
	○ 동호가목을 통하여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·개발 목적의 경우*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예외하고 있습니다.					
	* 단, 일반업무를 위한 내부망과 연구·개발망의 물리적 분리를 전제(비조치의견서 230050)					
	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없이 소스코드 리뷰 등 연구·개발 목적으로 복수의 폐쇄형 클라우드와 5호 단말기를 전용선 및 VPN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					
	 다만,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* 적용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					
	* 7	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	칙 [별표7] 망	분리 대체 정보!	보호통제	

- 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